

● 제311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2. 7. 2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21

I.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안일 : 2022. 7. 13.
- 다. 회부일 : 2022. 7. 14.

2.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특징

가. 세입예산

- 시민건강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4844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43억 6000만원(61.5%)이 증액되었음.
- 세입 증액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등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액 변경에 따라 1762억 1200만원이 증가(84.1%)하였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교부된 서북병원 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보상금이 세입처리 되어 경상적 세외수입 66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음.

〈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1예산	2022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342,800	484,425	300,065	184,360(61.5)
세외 수입	경상적	39,239	43,321	6,667(18.2)
	임시적	26,028	23,268	△1,598(△6.4)
	행정제재부과금	13	14	8(133.3)
지방교부세	1,066	700	700	-(-)
국고보조금 등	267,634	412,807	236,594	176,212(84.1)
지방채	8,200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20	4,315	1,246	3,069(246.3)

나. 세출예산 총괄

- 시민건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1조 1254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82억 6600만원(48.6%)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1예산	2022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700,304	1,125,418	757,153	368,266(48.6)
행정운영경비	8,214	8,604	8,354	250(3.0)
재무활동	1,642	4,104	-	4,104(-)
사업비	690,448	1,112,711	748,798	363,913(48.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한광모)

1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사유

- 서울특별시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위한 마중물 투자를 확대하고, 코로나 일상회복과 물가상승 등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적기 대응하기 위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6조 3709억원을 긴급 편성하여¹⁾ 제출하였음.
- 2022년도 제2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571억 5300만원 대비 3682억 6600만원(48.6%) 증액한 1조 1254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함.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은 이번 추경안의 편성배경에 대하여 ① 동행·매력 특별시를 위한 주요 사업 이행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②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체계 변화에 대응하며, ③ 정부추경에 대응한 국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며, ④ 지난 연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이번 추경안은 총 46건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액사업은 38건 3707억 9000만원, 감액사업은 8건 △25억 2500만원임.

1) 서울특별시 보도자료(2022.07.13.). “서울시, 올해 2차 추경(안) 6조3,709억 긴급편성...‘동행·매력 특별시’ 마중물 투자” .

2 세입 및 세출 총괄

1) 세입예산 총괄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 예산액은 4844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43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입 증액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19와 관련된 격리입원 치료비(1742억 4400만원 증), 응급의료기관 지원(11억 7500만원 증),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8억 3900만원 증) 등 국고보조금 교부액 변경에 따라 1762억 1200만원이 증가(84.1%)하였으며,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보상금이 세입처리 되어 경상적 세외수입(66억 6700만원 증)이 증가하였음.

〈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예산	2022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342,800	484,425	300,065	184,360(61.5)
세외 수입	경상적	39,239	43,321	6,667(18.2)
	임시적	26,028	23,268	△1,598(△6.4)
	행정제재부과금	13	14	8(133.3)
지방교부세	1,066	700	700	-(-)
국고보조금 등	267,634	412,807	236,594	176,212(84.1)
지방채	8,200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20	4,315	1,246	3,069(246.3)

2) 세출

가) 세출예산 총괄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1조 1254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82억 6600만원(48.6%) 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예산	2022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700,304	1,125,418	757,153	368,266(48.6)
행정운영경비	8,214	8,604	8,354	250(3.0)
재무활동	1,642	4,104	-	4,104(-)
사업비	690,448	1,112,711	748,798	363,913(48.6)

나) 부서별 세출예산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은 6개 과 1센터에서 편성되었으며, 추경 편성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감염병관리과 5건(5178억 5400만원), 보건의료정책과 16건(3438억 8300만원), 건강증진과 3건(1613억 6800만원), 코로나19대응지원과 1건(170억 8100만원), 식품정책과 2건(153억 600만원), 동물보호과 5건(78억 6200만원), 감염병연구센터 2건(20억 1600만원) 순으로 추경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사업소별 추경 편성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북병원 7건(4억 8800만원), 은평병원 1건(91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1건(6900만원) 순으로 추경금액이 높았으며, 어린이병원은 3건(△9억 6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음.

〈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부서별 추경(안)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 예산(안) (C=A+B)	증감률 (B/A)	건수
계	757,153	368,266	1,125,418	48.6	46
보건의료정책과	328,804	15,079	343,883	4.6	16
감염병관리과	168,245	349,609	517,854	207.8	5
코로나19대응지원과	16,915	166	17,081	9.8	1
건강증진과	159,466	1,092	161,368	0.7	3
식품정책과	15,112	195	15,306	1.3	2
동물보호과	6,305	1,557	7,862	24.7	5
감염병연구센터	1,948	69	2,016	3.5	2
보건환경연구원	22,973	69	23,042	0.3	1
어린이병원	10,905	△960	9,946	△8.8	3
은평병원	9,498	91	9,589	1.0	1
서북병원	16,982	488	17,471	2.9	7

다) 편성목적별 세출예산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을 기정예산 대비 3682억 6600만원(48.6%) 증액편성하여 1조 1254억 1800만원으로 제출하였는데, 편성목적별 주요 내용을 보면, ① 동행·

매력 특별시를 위한 주요사업 이행(131억원), ② 코로나19 감염병 대응(3467억원), ③ 정부추경에 대응한 국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40억원), ④ 지난 연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편성(41억원) 등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됨.

〈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편성 주요 내용

(단위 : 억원)

구분	주요내용	규모
동행·매력 특별시를 위한 주요사업 이행 (131억원)	취약계층 건강권 보호를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4.5
	자기주도적 건강관리를 위한 서울형 헬스케어 2차년도 사업	103
	반려동물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15.4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3467억원)	코로나19 대응체계 변화에 대응한 사업예산 감추경	△20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예산 확보	3,485
정부추경에 대응한 국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 (40억원)	의료기관 지원 국비사업 내시 변경	15
	정신건강 관련 국비사업 내시 변경	8.5
	소득층 가정을 위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8
지난 연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편성(41억원)	-	41

라)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세출예산 추경안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총 46개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이 가운데 증액사업은 총 38건(3707억 9000만원), 감액사업은 총 8건(△25억 25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안 세부 내역

(단위: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총계	(×236,594) 757,153	(×176,212) 368,266	(×412,807) 1,125,418	
	보건의료정책과	(×96,461) 328,804	(×1,899) 15,079	(×98,360) 343,883	
1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운영보조)	(×1,040) 2,080	(×234) 468	(×1,274) 2,5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남병원 책임의료기관 신규 지정에 따른 내시액 증액 편성
2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자본보조)	(×10) 20	(×6) 12	(×16) 32	
3	공공재활병원 건립	-	150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재활병원 타당성조사 시행비
4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	-	300	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의료원 설립 타당성조사 시행비
5	응급의료기관 지원	(×4,348) 5,054	(×1,175) 1,258	(×5,522) 6,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비내시)응급의료기 관 종별 변경 (지역응급 → 권역응급) 및 평가 결과보조금 지원단가 인상 반영
6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3,522	10,333	13,8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참여자 15만명 모집에 따른 서버 장비구입 및 위치 대여 관련 기타보상금 등 편성
7	보호자 없는 시민안심 응급실 운영	-	321	3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대상 취약계층 공공이송시스템 구축 및 간호간병 서비스 제공
8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417) 834	(×32) 63	(×448) 8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대상 시설 추가 신청(2개소)에 따른 내시 변경
9	광역정신건강복지	(×19)	(×-)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응급사업 : 운영비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센터 운영	3,700	940	4,641	편성 • 조기중재사업 : 센터 설치·운영비 편성
10	정신건강증진시설 인력확충	(×1,915) 3,247	(×239) 410	(×2,155) 3,657	• (국비내시)정신건강복지센터(조기중재센터, 응급개입팀 신설) 인력확충을 위한 내시 변경
11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2,662) 4,071	(×3) △5	(×2,659) 4,067	• (국비내시)마음안심버스 운영 차량 수 변경(2대→1대)에 따른 내시 변경
12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9) 18	(×11) 22	(×20) 40	• (국비내시)정신요양시설 확충 대상 시설 추가 선정(1개소)에 따른 내시 변경
13	청년중독관리사업(보조)	-	(×25) 38	(×25) 38	• (국비내시)청년층 대상 알코올, 마약류 등 중독 예방 등 지원
14	권역정신응급의료 센터 운영	-	(×163) 325	(×163) 325	• (국비내시) 신체질환을 동반한 정신응급환자 대상 24시간 대응 병상운영
15	권역정신응급의료 센터 운영(자본)	-	(×18) 35	(×18) 35	
16	국고보조금 반환	-	999	999	• 지난 연도 국고보조사업 정산 후 반납금액 편성(19개 사업)
감염병관리과		(×76,124) 168,245	(×173,475) 349,609	(×249,599) 517,854	
17	의료관련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724) 724	(×△242) △242	(×482) 482	• (국비내시) 참여의료기관 감소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 반영
18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17,931) 35,861	(×174,244) 348,489	(×192,175) 384,350	• (국비내시) 격리입원치료비 국비내시 증액 반영
19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비 지원	(×2,711) 5,423	(×△417) △834	(×2,294) 4,589	• (국비내시) 임시선별진료소 축소 등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 반영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20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 -국가예방접종실시	(×40,005) 86,678	(×△110) △239	(×39,895) 86,439	• (국비내시)60개월~12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액 변경내시 반영
21	국고보조금 반환	2,436	2,436	2,436	• 지난 연도 국고보조사업 정산 후 반납금액 편성 (19개 사업)
코로나19대응지원과		-	166	166	
22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	166	166	• 서북병원 이동병상 철거 비용
건강증진과		(×43,059) 159,466	(×839) 1,902	(×43,898) 161,368	
23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2,316) 5,019	(×839) 1,818	(×3,156) 6,837	• (국비내시) 지원 신청자 추가 지원을 위한 국비 증액 변경내시 반영
24	서울시 치매연수원 설립	-	50	50	• 치매연수원(연수센터) 설립에 관한 컨설팅 용역 실시
25	국고보조금 반환	-	35	35	• 지난 연도 국고보조사업 정산 후 반납금액 편성 (1개 사업)
식품정책과		(×6,351) 15,112	(×-) 195	(×6,351) 15,306	
26	농수산물 수거검사(자체)	248	51	299	•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수거검사 확대실시를 위한 예산 증액 편성
27	국고보조금 반환	-	143	143	• 지난 연도 국고보조사업 정산 후 반납금액 편성 (13개 사업)
동물보호과		(×977) 6,305	(×-) 1,557	(×977) 7,862	
28	시민참여 길고양이 관리	83	4	87	•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 행사실비 지원
29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지원	462	172	634	• 취약계층 반려동물 복지지원 보조금 추가 확보 및 펫위탁소 운영비(신규) 편성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30	자치구 동물보호사업 지원	271	15	296	•반려견 대기장소 조성비 반려견 동반출입 표지판 제작비
31	서울동물복지지원 센터 확충	83	1,350	1,433	•동북권센터(동대문) 리모델링 조성비 증액 편성
32	국고보조금 반환	-	16	16	•지난 연도 국고보조사업 정산 후 반납금액 편성 (3개 사업)
감염병연구센터		(×993) 1,948	(×-) 69	(×993) 2,016	
33	감염병 예측 분석 및 정보제공	287	24	311	•감염병 통합관리 시스템(7월 운영) 서버 운영비용 편성
34	국고보조금 반환	-	45	45	•지난 연도 국고보조사업 정산 후 반납금액 편성 (1개 사업)
보건환경연구원		(×3,554) 22,973	(×-) 69	(×3,554) 23,042	
35	국고보조금 반환	-	69	69	•지난 연도 국고보조사업 정산 후 반납금액 편성 (24개 사업)
어린이병원		(×-) 10,905	(×-) △960	(×-) 9,946	
36	어린이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4,160	△687	3,473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운영 종료에 따른 감추경
37	어린이병원 진료서비스 수준관리	1,024	△281	743	•선별진료소 검사 건수 감소에 따른 감추경
38	어린이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	388	8	396	•노후 의료장비(의료용 실링기) 교체 비용
은평병원		(×-) 9,498	(×-) 91	(×-) 9,589	
39	건강관리실 설치 및 운영	-	91	9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종사자 건강관리실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조정
	서북병원	(×227) 16,982	(×-) 488	(×227) 17,471	
40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4,589	△212	4,378	• 건강돌봄네트워크 운동을 위한 방문간호사 채용비용 편성
41	서북병원 공공의료서비스 수준 관리	4,331	64	4,394	• 치매안심병원 구축 : 30백만원(설계비) • 코로나병동 일반병동 전환 : 33백만원
42	서북병원 진료서비스 수준 관리	3,539	23	3,562	• 코로나19 야간간호료 등 : 23백만원 (복지부 교부금 세입조치 후 편성)
43	서북병원 고객중심 간호서비스 제공	98	△26	72	• 상반기 감염병전담병원 업무수행으로 의료질 향상관리(QI) 미추진에 따른 감추경
44	서북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	282	28	311	• 건강관리실 운영 : 28백만원(건강관리실 비치 물품 구매비)
45	기본경비	2,324	250	2,574	•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증액 편성
46	국고보조금 반환	-	361	361	• 지난 연도 국고보조사업 정산 후 반납금액 편성 (2개 사업)

3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 제45조2)에서는 “이미 확정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상의 요건 외에도 일반적으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추경안의 편성요건은 ① 목적적합성, ② 예측불가능성, ③ 보충성, ④ 시급성, ⑤ 연내집행가능성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³⁾, 이번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추경안은 편성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

요건	세부내용
① 목적적합성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을 것
② 예측불가능성	추경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일 것
③ 보충성	예비비를 포함한 본예산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극복이 곤란할 것
④ 시급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⑤ 연내집행가능성	해당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2.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20.

- 2)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2.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20.

1) 공공재활병원 건립 및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 <사업별설명서 p.987, p.990>

① 사업개요

- ‘공공재활병원’ 및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 추진은 취약계층 환자를 위한 양질의 전문재활치료서비스 제공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는 이러한 ‘공공의료 확충’에 2026년까지 6,120억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음⁴⁾.
-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계획⁵⁾’ 등에 따르면 우선, ① ‘공공재활병원’ 건립은 950억 원을 투입해 은평구 진관동에 200병상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주요기능은 접근성은 낮고, 비용은 높은 재활의료서비스로 인해 재활 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임.
- 다음으로 ②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은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동남권(서초구 원지동)에 4,000억원을 투입해 6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연면적 91,879㎡)을 건립하여 동남권 주민들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위기대응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화해 설계한다는 내용이며, 또한 환자 폭증으로 인한 병상부족 상황에 대비해 지하주차장 등 유휴공간에 임시병상(100병상 이상)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소, 전기, 급수 등 보급시설을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함.

4) 자료: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2022.05.06.). “사각지대없이 더 촘촘하게 `취약계층 위한 공공의료` 확충”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42868>

5) 자료: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34524(2022.07.14.). -취약계층 보호 및 재난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계획.

② 예산(안) 현황

- 이번 추경안은 ‘공공재활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비(1억 5000만원) 및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3억원)로 총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공공재활병원 건립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150,000	(x-) 0	(x-) 150,000
연구용역비	(x-) 150,000	(x-) 0	(x-) 150,000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300,000	(x-) 0	(x-) 300,000
연구용역비	(x-) 300,000	(x-) 0	(x-) 300,000

③ 검토의견

최근 코로나19 신규확진 더블링 현상이 지속되며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는 병상확보 총력전을 당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료의 확충 필요성과 ‘시급성’은 추경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짐.

-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철저한 방역체계를 기반으로 성공적 대응을 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의료적 측면에서는 공공 병상 부족과 의료 인력 부족의 문제가 반복되었으며, 이는 입원 대기 중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희생으로 이어진 바 있고, 또한 의료자원이 코로나19 방역 및 진료에 집중됨에 따라 기존 필수 의료서비스에서 일부 차질이 발생하기도 하여 전문가들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의 확충 등 양적 확대가 필요함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사유 등에 따라 정부는 2021년 8월 17일 관련 법률 일부를 개정⁶⁾하였음.

- 개정된 「공공보건의료법」 제4조⁷⁾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인력, 병상, 시설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과 “공공보건의료가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보건의료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11호, 2021. 8. 17, 일부 개정]

[제정·개정이유] <중략>

전세계적 코로나19 확산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철저한 방역체계를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대응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반면, 성공적인 방역에 비해 의료적 측면에서는 많은 한계를 확인하였음. 특히 공공 병상 부족과 의료 인력 부족의 문제가 반복되었으며, 이는 입원 대기 중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희생으로 이어진 바 있음. 또한 의료자원이 코로나19 방역 및 진료에 집중됨에 따라 기존 필수 의료서비스에도 일부 차질이 발생하기도 했음. 이에 공공보건의료 체계 전반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의 확충 등 양적 확대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도 공공적 역할이 강조되는 기능·역할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중략>

이에 공공보건의료의 실질적 수행 범위와 기관을 확대하고, 협력 체계의 원활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전달체계의 범위를 넓히며, 책임의료기관의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위탁 대상을 확대하여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련 계획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보다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보건의료법)」 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주요 시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인력, 병상, 시설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구축·관리 방안
 5. 공공보건의료가 취약한 지역·계층·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
 6. 공중보건 위기 상황 시 대응 방안
 7.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 ⑥ <생략>

취약한 지역·계층·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동 법 제3조8)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①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고, ②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고, ③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음.

- 또한, 최근들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일주일마다 확진자가 2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현재의 확산 형태를 분석하였을 때, 하루 확진자 수가 30만명이 될 가능성을 예측⁹⁾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정부가 2022년 7월 13일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에서 ① 호흡기환자진료센터 확충, ② 확진자 추세를 고려한 병상 재가동 준비, ③ 분만, 투석, 소아 진료 등 특수 환자를 위한 음압병상 추가 확보 등에 관한 의료 대응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울러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권고문’에서도 “재유행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갖추고,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방역·의료 대응 역량 강화”를 강조¹⁰⁾하였으므로, 이를 종합해볼 때, 재난 발생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보건의료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중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9) 자료: 이윤주 기자, 2022.07.18., “정재훈 교수 "지금은 코로나 재유행 급증 시기...'더블링' 3주 더 갈 것"”,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71810290000280?did=NA>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본 추경안의 편성은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추경편성의 '시급성'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이번 추경안은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¹¹⁾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4항¹²⁾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의 2¹³⁾에 따라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연구용역비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10)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2.07.13.,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72165

11)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중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 ④ <생략>

1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의료원법)」 제4조(설립 및 등기) ① ~ ③ <중략>

④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
2. 지방의료원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3. 지방의료원을 신축·이전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상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⑤ ~ ⑥ <생략>

1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방의료원법)」 제2조의2(지방의료원 설립 타당성 검토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지방의료원 설립·해산등”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항목별 세부적인 조사 절차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분포, 의료 이용 및 공급 현황
2.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3. 지방의료원 설립·해산등에 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결과
4. 지방의료원 설립·해산등이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5. 지방의료원 설립·해산등에 따른 소요 예산과 재원조달 방법 및 그 적정성

②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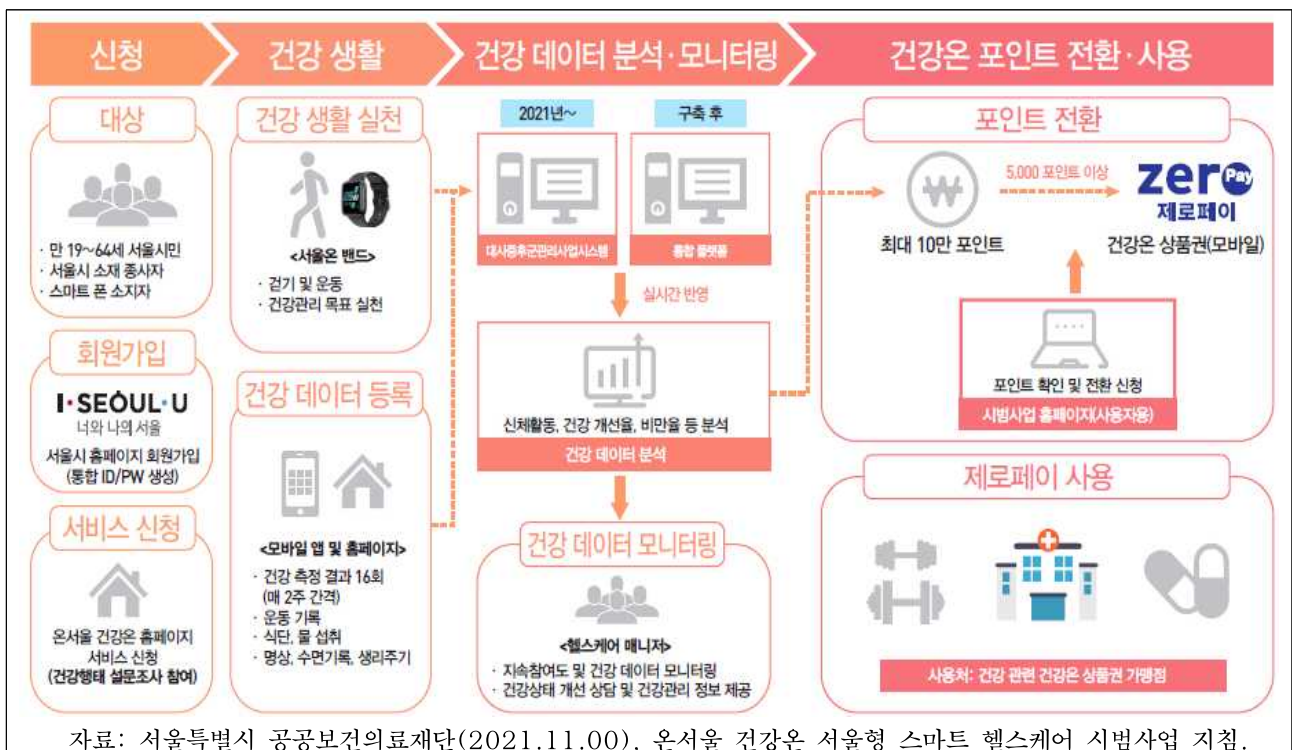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해산등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④ ~⑩ <생략>

2)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별설명서 p.998)

① 사업개요

-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사업명: 온서울 건강온)은 서울온 밴드와 모바일 앱 등으로 수집된 신체활동, 식이 등의 생활습관을 모니터링 하고, 건강관리 목표 수립 지원 및 건강 생활 실천에 대한 보상으로 건강온 포인트를 지급하는 비대면 건강관리 사업임¹⁴⁾.
- 1차년도 사업 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0개월이며, 개인별 서비스 제공 기간은 8개월로 운영됨¹⁵⁾.
 - 참여 대상은 만19세~64세 서울시민 또는 서울 소재 직장인·자영업자이며, 건강활동 측정을 위한 서울온밴드(스마트밴드)는 총 4종 중 1개를 사업기간 동안 대여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14) 자료: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2021.12.)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운영방안 마련 연구 결과보고서, p4.

15) 자료: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2021.12.)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 타당성 마련 위한 기초연구, p10.

② 예산(안) 현황

- 이번 추정안은 20만명(보급 15만명, 개인소유 5만명)을 대상으로 2차년도 사업(사업명: 손목닥터 9988)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3억원), 공공운영비(8억 805만원), 연구용역비(2억 5390만원), 기타보상금(75억원), 자산및물품취득비(14억 7148만원)로 총 103억 3344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13,855,755	(x-) 3,522,320	(x-) 10,333,435
기간제근로자등보수	(x-) 1,552,320	(x-) 1,552,320	(x-) 0
사무관리비	(x-) 1,090,000	(x-) 790,000	(x-) 300,000
공공운영비	(x-) 908,053	(x-) 100,000	(x-) 808,053
연구용역비	(x-) 253,901	(x-) 0	(x-) 253,901
기타보상금	(x-) 8,500,000	(x-) 1,000,000	(x-) 7,50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x-) 1,471,481	(x-) 0	(x-) 1,471,481
기타자본이전	(x-) 80,000	(x-) 80,000	(x-) 0

-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우선 ① 기타보상금에서 2차년도 사업 인원 20만명 중 개인밴드 소유 5만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5만명에게 보급할 스마트밴드 15만개 구매를 위한 비용으로 75억원을 편성하였음.

과목구분	산출내역
기 타 보 상 금	○헬스케어 보급 스마트밴드 구입 150,000개*50,000원 = 7,500,000천원

- 또한 ② 자산및물품취득비는 2차년도 사업의 인원이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헬스케어 전용 DB서버 구축비(14억 7148만원), ③ 공공운영비는 헬스케어 앱 운영을 위한 공공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 및 AI식단관리 등 민간 스타트업과의 연계된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8억 805만원), ④ 연구용역비는 헬스케어 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 수립(2억 5390만원) 등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의 고도화를 위하여 총 25억 3344만원을 편성하였음.

과목구분	산출내역	
자 산 및 물 품 취 득 비	○헬스케어시스템 전용 DB서버 구축	= 1,471,481천원
	-DB서버 등 H/W 구매 736,978,000원	= 736,978천원
	-DBMS 등 S/W 구매 734,503,000원	= 734,503천원
공 공 운 영 비	○헬스케어 공공 클라우드 사용료 22,337,700원(월)*12개월	= 268,053천원
	○헬스케어 신규서비스 사용료 15,000,000원(월)*12개월*3개	= 540,000천원
연 구 용 역 비	○서울형 헬스케어 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253,901,000원	= 253,901천원

- 이외에도 ⑤ 사무관리비는 참여자 모집 홍보, 시범사업 성과대회 등을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음.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사 무 관 리 비	○이모티콘 제작 보급 50,000,000원	= 50,000천원
	○댄스 챌린지 확산 100,000,000원	= 100,000천원
	○참여자 모집 홍보 50,000,000원	= 50,000천원

	○시범사업 성과대회 50,000,000원	=	50,000천원
	○스마트밴드 운영 관리 50,000,000원	=	50,000천원

③ 검토의견

첫째,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2차년도 사업’은 서울시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1차년도 사업’에 관한 효과성과 경제성 등에 대한 평가·분석 등을 토대로 최적의 사업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경의 “시급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1차년도 사업’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신규사업으로 44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현재 1차년도 사업이 시행(사업기간: 2021년 11월~2022년 8월)되고 있는 상황임.
- 이번 추경예산은 ‘2차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우선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제8조16)에 따르면 시장은 가능한 한 계량화된 평가지표에 의한 측정을 통하여 시범사업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범사업 평가를 완료한 후에 시범사업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가 제정된 목적17)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의 효

16)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제8조(시범사업평가) ① 시장은 가능한 한 계량화된 평가지표에 의한 측정을 통하여 시범사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범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시범사업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범사업 평가를 완료한 후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공공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는 것이며, 아울러 시장으로 하여금 시범사업평가의 결과를 해당 사업시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최적의 사업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¹⁸⁾.

-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¹⁹⁾에서는 시범사업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지표의 개발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1차년도 사업' 지침을 수립할 당시에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1차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과정지표, 결과지표)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으며, 2022년 8월 이후 1차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및 평가실시를 예정²⁰⁾한 바 있음.

과정 지표	참여자 등록률	시범사업 목표인원 대비 서비스 참여자로 등록된 비율
	참여 완료율	전체 서비스 참여자 중 중도탈락자를 제외한 32주 서비스 참여 완료자의 비율 * 중도탈락자: 서비스 기간 중 4주 이상 데이터 전송이 없고, 2회 참여 독려에도 데이터 전송이 없는 자
결과 지표	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참여 완료자가 평가한 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효능 평가	서비스 참여 완료자가 평가한 건강관리 정보 콘텐츠/서울은 밴드 활용 등 서비스 편리/유익/효율에 대한 점수
	행동변화 단계 개선율	서비스 전·후 실시한 신체활동 행동변화 조사를 바탕으로 신체활동 행동변화 단계가 개선(1~4단계 → 2~5단계 또는 유지(4, 5단계 → 4, 5단계)된 사람의 비율
	건강행태 개선율	서비스 전·후 건강행태 지표가 1개 이상 개선된 사람의 비율 * 건강행태 지표: 신체활동(①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② 걷기 실천율, 영양저염 선호율, 영양표시 독해율)
	건강 활동 실천율	참여자가 설정한 건강관리 목표 달성을 위해 주 3일 이상 7,000보/일 이상을 실천한 참여자 수 비율

자료: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2021.11.00), 온서울 건강은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시범사업 지침.

- 17)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범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공공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8)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제10조(시범평가결과의 환류) 시장은 시범사업평가의 결과를 해당 사업시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최적의 사업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 19)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평가지표의 개발)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가능한 한 계량화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평가지표의 개발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20) 자료: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2021.11.00), 온서울 건강은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1차년도 사업 지침. p18.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시범사업 평가·분석 용역(기간: 22.06.01~22.09.30.)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며²¹⁾, 2022년 9월 말 용역이 종료될 예정에 있음.
- 따라서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공공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1차년도 사업평가가 완료된 이후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최적의 2차년도 사업 방향을 모색하고 다음연도 본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재원의 효율성, 사업의 확산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추경의 “시급성”은 검토가 필요해 보임.

둘째,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1차년도 사업’의 결산현황과 ‘2차년도 사업’의 추진계획 일정 등을 바탕으로 “연내집행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1차년도 사업’의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신규사업비로 확보한 44억 7500만원에서 15억 226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4억 744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구체적으로 ① 스마트밴드 구매 단가계약 체결(2021년 10월 29일) 이후 참여자 모집을 완료하였으나, 사업참여자 승인·배송·연동 등에 기간이 소요되어 납품기한의 연장으로 인하여 계약대금 지급잔액이 이월되었고, ② 당초 스마트밴드 5만개 구매를 위한 예산으로 25

21) 자료: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23092(2022.4.12.)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시범사업 평가·분석 용역 추진계획(안).

- 과업의 주요내용은 ① 사업참여 현황 조사 및 분석 ② 건강활동 실천율, 건강목표 달성률 등 사업 추진실적 및 정량 평가 ③ 사업의 질적 평가 및 분석, 한계점 도출 등 정성 평가

역원을 편성하였으나, 22억 6000만원에 계약이 이루어지며, 2억 40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²²⁾하지 못하고 불용액이 발생한 것임.

- 그런데 ‘2차년도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 일정 등을 보면, 스마트밴드 사업자 선정 및 사업진행은 ‘1차년도 사업’과 동일한 시점인 11월부터 추진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번에도 연내집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스마트밴드 구매계약으로 발생하게 되는 낙찰차액을 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불용시킬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연내집행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서울시 치매연수원 건립 <사업별설명서 p.1065>

① 사업개요

- ‘서울시 치매연수원 건립’은 급속한 고령화와 치매환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치매전문 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치매정책·서비스 연구 개발을 위한 전문교육·연구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기능은 ① 치매전문교육 ② 연구 ③ 치매가족 지원 등이며, 서울시내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교육공간, 연구공간, 체험공간, 휴식공간 등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연면적 6,300 m^2)의 서울시 치매연수원을 설립·운영하겠다는 것임²³⁾.

22) 자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20.1.1.시행)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경 예산 편성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신속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낙찰차액을 여유재원으로 활용하여 추경시 사업 편성” 하도록 정하고 있고

23) 자료: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26687(2022.07.13.). 치매정책 연구개발 및 전문교육을 위한 서울시 치매연수원 설립·운영

② 예산(안) 현황

- 이번 추정안은 '서울시 치매연수원' 건립 추진을 위한 기초조사 컨설팅 용역 실시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총 50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서울시 치매연수원 건립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50,000	(x-) 0	(x-) 50,000
사무관리비	(x-) 50,000	(x-) 0	(x-) 50,000

③ 검토의견

서울시 치매연수원 건립 필요성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함.

- 「치매관리법」 제3조(24)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치매환자의 가족 부담 완화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도록 노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18조(25)에서는 치매

계획(안).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42868>

- 24) 「치매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치매전문교육, 연구 및 치매가족 지원 등을 위한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치매관리법」 제16조의2(26) 및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27) 등에 따라 서울시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의 업무를 보면, “치매관련 종사자 전문교육·

25) 「치매관리법」 제18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수행에 드는 비용
- 1의2.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에 따른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 1의3. 제17조의2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 「치매관리법」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치매관리사업 계획
2. 치매 연구
3.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4. 치매 관련 시설·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5. 치매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6.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7.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8.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 추천
9. 제12조의3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사무의 지원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

② ~ ③ <생략>

27)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업무) 광역치매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관련 대책 수립 및 치매관리사업 기획
2. 치매관련 자원조사,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 연계 및 기술지원
3. 치매관련 종사자 전문교육·훈련
4. 치매관련 연구사업
5. 치매인식 개선사업
6. 치매관리법 제6조에 따른 서울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 계획 수립·지원
7.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 추천
8.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사무의 지원
9. 서울특별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관리 사업

훈련”, “치매관련 연구사업”, “치매인식 개선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향후 건립 예정인 서울시 치매연수원의 경우, 현재의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기능 및 역할과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광역치매센터와의 기능 재정립 또는 서울시 치매연수원의 건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하여 보다 신중히 논의하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또한,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 중 ‘시급성’(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짐.